

#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호	안 호 호	5099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13.

발의자 : 황주홍 · 정동영 · 이찬열

소병훈 · 이양수 · 김태흠

이동섭 · 정인화 · 이종걸

### 전혜숙 의원(10인)

## 전혜숙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·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의 목적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농어업·농어촌의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목적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,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(안 제1조, 제26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 중 “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”를 “활력 증진 및 농어업·농어촌의 가치를 제고하고”로 한다.

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·경제적 <u>활력을 증진시키고</u>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 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②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-----  ----- <u>활력 증진</u>  <u>및 농어업·농어촌의 가치를 제고하고-----</u>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자는</u>  <u>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</u>  <u>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u></p>